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96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윤건영 · 김 윤 · 박선원
박지혜 · 박해철 · 신정훈
용혜인 · 윤종균 · 이광희
이상식 · 이재관 · 장종태
정진욱 · 주철현 · 채현일
한민수 · 황정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시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등을 이유로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어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왔고, 나아가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정위헌결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

관, 지자체를 기속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한정위헌결정에서 지적인 위헌적 내용을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음.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으로 법률을 해석한 법원의 판단은 예외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는 위헌결정의 범위에 한정위헌결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있음.

한정위헌을 포함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위헌성이 확인된 내용을 적용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에 한정위헌결정 및 그에 기한 재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고 입법형성권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 및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본문 중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를 “조항에 한정하여 위헌 여부를 결정하되,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이 경우 위헌결정에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이하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헌으로 결정된”을 “위헌결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헌으로 결정된”을 “위헌결정된”으로 한다.

제7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우”를 “경우(한정위헌결정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한정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에 관한 적용례) 재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한
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만을 결정한다. <후 단 신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 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 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위헌결정) ----- -----조항에 한정하여 위헌 여부를 결정하 되,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헌결정 에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 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이하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포 함한다. <단서 삭제>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 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위헌결정된-----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헌결정 된-----

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75조(인용결정) ① ~ ④ (생략)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생략)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_____.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인용결정)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

----- . 이 경우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한정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경우(한정위헌결
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⑧ (현행과 같음)